

## 차액납부 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공매재산	관리번호	
	공매재산의 표시	
	처분청	체납자
신청인	성명(상호)	
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
	소재지	
	전화번호	

「지방세징수법」 제9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에 따라 매수대금의 차액납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첨부서류	공매재산에 대해 저당권, 전세권, 가등기담보권,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#### 유의사항

-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매수대금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으면 매수인은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분기일에 매수대금으로 납부(매수인에게 배분될 금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 제기 금액도 납부)해야 하고,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.